

## I. 서론

### 1. 도입배경

세계 금융시장은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그리고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각국의 금융법제 및 조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경쟁구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금융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각각 자국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제를 개선함으로써 금융그룹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편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향후 해외 굴지의 금융기관들의 지속적인 국내 진출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시장은 기존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금융그룹, 은행지주회사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종합금융기관, 그리고 국내 보험회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금융그룹화를 이끌고 있는 두개의 축은 크게 同種 업종간 합병(consolidation)을 통한 대형화와 異種 업종간 겸업화(diversification)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보다는 업종간 겸업화를 통한 대형화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대형화의 방법으로서 과거에는 보험회사간 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이 많았으나 점차 異種 업종간 합병을 통한 겸업화가 증가하고 그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sup>1)</sup>

선진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겸업화의 성과를 통해 금융기

---

1) Group of Ten(2001)에 따르면 전세계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의 건수가 1990년 324건에 머물렀던 것이 1990년 후반에는 9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중 업종간 합병은 전체 합병건수의 약 20%, 국경간 거래도 90년대 전 기간을 통해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oup of Ten(2001), p.335. 이견범, 김우진(2005), pp.43-44. 재인용.

관간 구분이 없어지고(convergence), 은행과 보험회사의 상호 보유가 확대되는 등 타 금융업무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1999)제정 이후 금융서비스의 통합 또는 수렴화 현상이 촉발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겸업화 및 대형화 추세를 촉진한 다른 요인은 이른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제도로 대표되는 업무영역 규제완화이다. 은행과 보험의 대표적 겸업형태인 방카슈랑스가 '80년대 이후 유럽에서, '9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에서, 그리고 마침내 국내에서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은행과 보험의 본격적인 금융서비스의 수렴화가 급진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금융서비스의 수렴화는 은행 중심과 보험 중심의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거나 한 개 이상의 금융기관<sup>2)</sup>들이 공동의 소유관계를 통하여 同種 업종 회사들간 또는 異種 업종 회사들간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금융그룹을 형성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인 인수합병의 확대로 인하여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은 다각화된 사업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업지역 또한 다변화하므로써 글로벌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들이 겸업화, 대형화, 글로벌화를 통해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고객, 상품, 또는 지역을 확대하여 시장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금융그룹화의 방식에는 완전겸업(in-house)방식, 자회사 방식, 지주회사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sup>3)</sup> 특히 지주회사 방식은 여러 조직 형태중 최

2) 1개의 금융회사가 다양한 업종을 하는 여러 부서를 두는 경우를 금융그룹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전통적인 universal banking이 허용된 유럽에서도 한 회사가 다양한 모든 금융업종을 수행하는 in-house방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자회사,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금융그룹화를 추진한다. Walter, Ingo(2004), pp.101-102, 이진범, 김우진(2005.12), p.49, p.53. 재인용.

3) 완전겸업방식은 금융회사가 타금융업을 본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며, 자회

근의 금융산업 트렌드에 적합한 형태로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조직형태이다. 금융지주회사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자회사로 소유하면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모·자회사나 완전겸업 방식보다 우월한 기업조직형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재 주요 국가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형화 및 겸업화 촉진 방향으로 법제도가 선회하면서 지주회사제도를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sup>4)</sup>

국가별로는 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금융권별 전업주의를 고수하였지만 해외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국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추진하였다. 즉 업종별 차단벽(firewall)은 유지하면서도 겸업화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주회사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다.<sup>5)</sup> 반면 유럽의 경우 자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그룹화가 일반적이다. 영국의 경우 모회사가 상업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증권, 보험 등의 자회사를 갖는 방식이, 유럽 대륙은 모회사가 상업은행 및 증권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의 경우 1987년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에 허용하였던 지주회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그 이유는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체제 등이 미흡한 국내 현실에서 지주회사가 변칙적인 계열기업 확장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고,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이 나타날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국가가 거의 없으며 지주회사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업조직의 하나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IBRD, OECD에서도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우리 정부에 대

---

사 방식은 각종 금융업무를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4) 세계 25대 금융그룹중 지주회사 방식의 그룹이 16개로 전체의 64%이다.

『The Banker』, 2005년 7월호

5) 이진범, 김우진(2005), p.49.

해 지주회사의 허용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sup>6)</sup>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부실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통합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의 수단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sup>7)</sup>, 국내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직적 결합 형태를 수평적 결합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제도를 권장하였다.<sup>8)</sup>

또한 순수지주회사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는 있지만 2000년 이후 지주회사제도의 활용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설립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sup>9)</sup>

국내의 경우 지주회사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형화, 겸업화 및 글로벌화 구축에 유용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국내 대규모기업집단의 형성은 수직적 결합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반면에 지주회사의 형성은 수평적 결합을 통한 기업의 대형화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10)</sup>

##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글로벌 금융그룹의 확산과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

6) 김진식, 노혁준(2006), p.5.

7)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차원에서 대기업집단으로부터 금융업을 분리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활용방안이 논의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재형(2000), p.189.

8) LG그룹은 2003.3.1부터 일반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대표적 대기업 사례이다.

9) 2000년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 활성화 정책을 입법화하였으며, 2001년 1월 일반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하였고, 2002년 1월에는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적은 중소기업의 순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최소자산총액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하여 규제 대상을 축소하였다.

10) 김민제(1999), p.404 ; 홍복기(1998), p.26.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험시장에서도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 중심의 불균형한 겸업화만 제한적으로 진행해 온 결과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의 제2금융권 회사들은 은행권과의 대형화, 겸업화 경쟁에서 상당한 열세로 작용하여 향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현재 국내 은행산업은 상당부분 외국계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sup>11)</sup>, 따라서 향후 국내자본 계열의 제2금융권의 경쟁력 약화는 국가적으로 볼 때 금융산업이 외국계 자본에 의해 주도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상당 부분 잠식될 소지가 높아 국부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기관에 대한 선택기회의 제공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험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금융마케팅은 이미 고객중심(customer driven)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경우 고객 상호간의 정보이용이 가능하고 원스톱쇼핑과 종합금융서비스가 비교적 수월한 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이라야 경쟁력있는 전략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장 확대를 통한 금융그룹화는 규모의 경제, 비용 및 수입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 시장 영향력 확대, 정보력의 확대, 우수한 인재 유치, 수입다변화를 통한 수익흐름의 안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하에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국내 보험회사의 새로운 사업영위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에 대해 관심을 갖는 보험회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11) 외국계 은행(제일, 외환, 한국씨티, 외은지점포함)의 은행산업 시장점유율(자산기준)이 1997년 4.2%에서 2004년 10월말 현재 21.8%이며, 외국계보험사의 생보 시장점유율은 1997년 4.8%에서 2005년 12월말 17.7%이다. 이 건범, 김우진(2005), p.46,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2006년 봄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p.35.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이 은행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제2금융권 특히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금융지주회사로의 이행 가능 여부에 따라 향후 금융기관의 발전기회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때,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산업간 불균형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지주회사 관련 선진법제 및 회사 운영사례의 분석 및 비교를 통해 국내 보험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실질적 활용방안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험산업 정책 및 규제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보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의 전략적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보험회사들이 보험사업 영위 방식 선택시 보험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II장에서는 국내 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국내 관련법을 중심으로 국내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IV장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의 보험지주회사 제도를 고찰하고 V장에서는 세계 주요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운영사례를 살펴본다. VI장에서는 국내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VII장에서는 국내 보험지주회사 제도도입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12) 현행 국내제도상 보험지주회사 설립장애요인으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에 따른 규제가 주로 산업자본인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또한 지주회사 설립시 다양한 코스트발생과 규제로 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주주의 안전지분을 확보상의 문제이다. 자세한 내용은 III장, VI장에서 후술한다.